

데이터 유통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쟁점

-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

2020. 9.

손승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Contents

- 1. 배경**
- 2. 국내외 데이터 거래 활성화 기반**
- 3. 데이터 활용 및 거래에 있어서 지식재산 쟁점 개요**
- 4. 데이터 거래에서 무엇을 거래하는가?**
- 5. 어떤 데이터가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는가?**
- 6. 데이터거래 형태와 지식재산권 이슈**
- 7. 데이터 마이닝 면책 범위**

1. 배경

데이터 거래 환경 변화

- **개정 데이터 3법 시행** 이후 국내 데이터 활용 및 거래시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대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정 신용정보법에서는 안전하게 활용 가능한 익명·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기업 간 데이터(가명정보)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데이터 활용 거래 촉진 기대
- 뉴딜사업을 통해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쏠 산업의 데이터·5G·AI 활용·융합 가속화 추진
 - '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원 투자(190.1만개 일자리) 중 38.5조원을 D.N.A 생태계 강화에 투자
 -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10개→30개), 데이터 구매, 가공 바우처(8,400개사)
 - 공공데이터 14.2만개 전면 개방 및 제조·의료·바이오 등 분야별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1. 배경

데이터 거래 환경 변화

현재, 「지능정보화 기본법」*(‘20.6. 과기정통부)은 데이터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공공데이터법」**은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촉진을 규율

* 데이터센터(제40조), 데이터 시책(제42조), 데이터의 유통·활용(제43조) 등 규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법」은 동 법률의 특별법적 지위

- 민간·공공 데이터거래소, 플랫폼, 마켓플레이스 등 증가하면서 데이터 거래 기반 구축

[단독] "흩어진 데이터 한곳에"... **민관 통합 거래소** 추진한다 ...

2020. 8. 7. - 데이터 통합 거래소 검토 연구용역 긴급공고민관 20여곳 데이터 거래 플랫폼 하나로"디지털 뉴딜, 데이터댐 구축에서 시작"

2. 국내외 데이터 거래 활성화 기반

국내 데이터 거래 활성화 정책

■ 공공부문 데이터 거래 기반

- 데이터 거래 플랫폼 '**데이터스토어**'('13년) (現 1,427종 제공)
- 공공데이터 포털 (행정안전부)
- '19년 **10개** 분야별 **빅데이터 거래 플랫폼** 구축 완료
- **금융 데이터 거래소** 출범 ('20.5.11)
 - * 공급자-수요자 상호 매칭해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 운영
- 제조 데이터센터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전략 확산(중기부)



■ 민간부문 데이터 거래 기반

- N클라우드플랫폼(네이버), OPEN API포털/빅데이터허브(SK텔레콤), KDX
- 오디피아(LGCNS), API스토어(KTH), BIGSIGHT(KT), QBigx(CJ올리브네트웍스)등
 - * 공급자와 수요자를 위한 파일형 데이터 거래 중개 / AI 학습데이터 생산 및 유통 등

2. 국내외 데이터 활용 현황

해외 주요국의 빅데이터 생태계 현황

▪ 해외 주요국 데이터 활성화 정책

(일본) 2020년까지 정부주도, 민간참여 원칙 데이터 거래 시장 개설

- 「AI·데이터의 이용 권한에 대한 계약 가이드라인」(‘18년)(경제산업성)
-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개정 완료
- IoT빅데이터거래소 설립 준비 중(‘20)

• 日, 자민당 지적재산권전략조사회는 ‘20.5월 「산업데이터활용추진법(가칭)」 제정 필요성 발표하였는바, **글로벌 데이터 경제 주도권 경쟁 심화**

- 조사회는 데이터거래 가이드라인, 데이터 오너십, 데이터 이동권, 한정제공 데이터의 기준, 데이터 품질표시·이력관리·변조방지 등 표준화, 데이터 컨트롤타워 등에 관한 사항을 동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

• (중국) 빅데이터를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15년)

- * **세계 최초 귀이양 빅데이터거래소** 설립(민관혼합국유기업) (15.4), 상해거래소(16년)

2. 국내외 데이터 활용 현황

해외 주요국의 빅데이터 생태계 현황

■ 해외 주요국 데이터 활성화 정책

• (미국) **민간**을 중심으로 데이터 거래 시장이 활발히 발전

* 세계 가장 활발한 민간 주도 데이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약 200조원의 데이터 시장에서 **데이터**

브로커(데이터거래전문기업)들은 데이터 **매입**·가공·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엑시움, 코어로직 등)하며, 거래·과금 가격도 민간 자율적으로 형성 (공공데이터 결합 가공 → IP화 → 파생 新 데이터)

· 미국은 데이터를 판매·유통하는 데이터 '브로커(Data Broker)'가 발달하였으므로 향후 우리 데이터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전문인력으로서 데이터브로커 양성 필요
· 최근 데이터브로커를 넘어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마이데이터, 정보은행 등으로 진화

• (EU) "Digital Single Market"의 한 축으로 유럽 데이터경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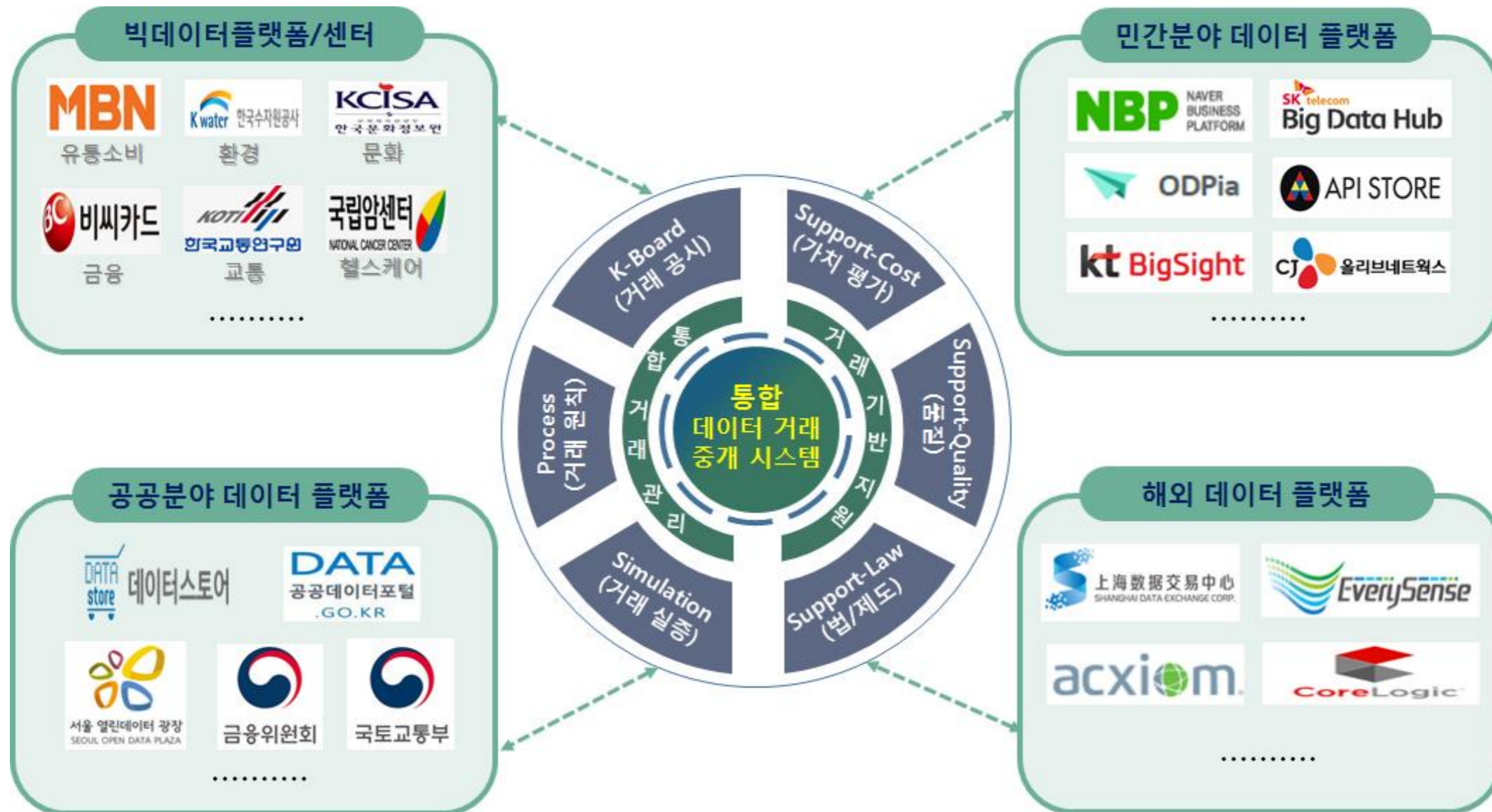
* 역내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

* GDPR 개인정보**보호**와 **활용** 모두 고려

2. 국내외 데이터 거래 활성화 기반

데이터 거래 중개 시스템 개념도

< 데이터 거래 중개 시스템 개념도 >



3. 데이터거래에 있어서 지식재산 쟁점 개요

- 데이터 거래에서 무엇을 거래하는가?
-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는 데이터는 무엇인가?
- 데이터거래 형태와 지식재산권 이슈
- 결합데이터 또는 파생 데이터데이터의 권리 귀속
- 데이터 마이닝 면책 범위

4. 데이터 거래에서 무엇을 거래하는가?

■ 거래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란 무엇인가?

• 데이터의 개념

- 빅데이터는 고도화된 네트워크와 스마트폰, 센서 등 IoT 기기를 통해 얻어진 위치정보, 행동이력, 자율주행 자동차, 각종 기계 등에서 생성된 비정형 데이터로서 상당한 양의 데이터
- 과거 분석이 어려웠던 비정형데이터를 분석하게 되고, 데이터의 결합·가공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통찰력을 얻게 됨
- 막대한 양의 Raw data를 분석하기 때문에 모수의 증가로 데이터의 정확성이 올라감

* 데이터 거래 및 유통 활성화로 데이터양 확보 필요

4. 데이터 거래에서 무엇을 거래하는가?

■ 거래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란 무엇인가?

구조화 데이터와 비구조화 데이터	
구조화 데이터	비구조화 데이터
데이터는 그 중 관계 데이터베이스 등에 적합한 구조화된 데이터 (예, 고객 데이터나 매출 데이터 등)	데이터는 한층 더 넓은 범위의 데이터를 포함. 예) 전화, 라디오, 방송 등의 음성 데이터, 텔레비전 방송 등의 영상 데이터, 신문·잡지 등의 활자 데이터, 블로그나 SNS 등의 소셜 미디어에 사용된 문자 데이터, GPS에서 송신되는 데이터, IC카드나 RFID 등의 각종 센서로 감지되어 송신되는 데이터 등 최근 급속하게 생성·유통되는 데이터 포함

개인정보와 비개인정보	
개인정보	비개인정보
개인 데이터는 개인의 속성 정보, 이동·행동·구매 이력, 웨어러블 기기로부터 수집된 개인정보와 더불어 개인 정보의 경계가 애매한 것을 포함한 개인과 연관성이 발견되는 광범위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 이 중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취급될 것을 요하며, 데이터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도입된 '익명가공정보' 제도*가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음	개인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는 데이터

- ▶ 現 거래 데이터형태는 **구조화된 데이터(데이터베이스)**가 많고 비정형데이터 거래 점차로 증가
- ▶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상 가명처리 기준이 엄격하여 사실상 **가명정보 거래에 장애**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 따라서 거래되고 있는 것은 **'통계정보'**와 같이 비개인데이터가 대부분을 차지

4. 데이터 거래에서 무엇을 거래하는가?

■ 무엇을 거래하는가?

- 데이터의 정체성
- 데이터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인가? No.
- 재산적, 경제적 가치 보유
- 데이터가 지식재산권 등에 의해 직접 보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데이터에 합법적으로 접근하여 그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사실상의 지위 또는 계약에 따른 데이터 이용권한을 결정한 경우, 그러한 **채권적 지위**를 가짐
- 실제 라이선스, 양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비정형데이터, DB 등)

5. 어떤 데이터가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는가?

■ 데이터 보호 방안

- 데이터 거래를 전제로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의 보호 필요성 지속적 제기
- 데이터는 민법상 물건에 포함되는 무체물이 아니므로 소유권, 점유권,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 등 민법상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음
- 「저작권법」 **데이터베이스 배타적 권리**
 - 구조화된 데이터, 즉, 정형데이터로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적합한 구조로 된 데이터(고객 데이터, 매출데이터 등)에 한정하여 일정한 보호를 하고 있음
 - ※ 저작권법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정의(저작권법 제2조 19호). 상당한 자본과 인적·기술적 투입을 한 제작자에게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저작권법 제93조 1항)
-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행위 금지 내지 영업비밀 보호**
 - 제조업의 생산 방법에 관한 노하우·센서 메이커의 데이터 클렌징 노하우, 서비스 개발 업체에서 데이터를 서비스에 활용하는 노하우, 데이터 창출이나 데이터의 유통·활용에 종사하는 사람의 노하우 등이 집약된 데이터 :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유용성
- 「콘텐츠산업 진흥법」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의 보호 등**

5. 어떤 데이터가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는가?

■ 데이터 보호 방안

- ‘**영업비밀**’에 이르지 못한 ‘**데이터**’에 대한 보호 (입법공백)

- 저작권법은 센서나 카메라 등 기기에 의해, 기계적으로 창출되는 데이터나 스마트폰 등 사용자의 사용 이력 등 데이터 집합에 창작성을 인정하는 것은 곤란한 경우가 많음

→ 일본 ‘**한정제공데이터**’ (부경법 개정, 18.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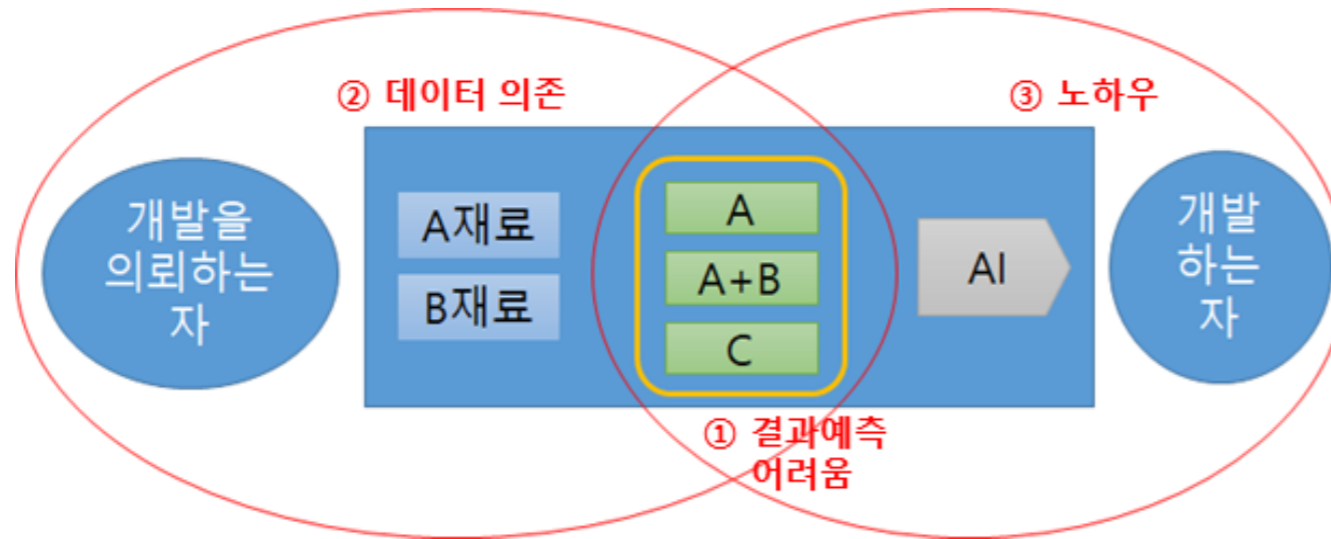
* **한정제공데이터**: “업으로서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정보로 전자적 방법(전자, 자기적 방법 기타 타인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해 상당한 양이 축적되고 관리되는 기술상·영업상 정보(비밀로 관리된 것 제외)”로 정의(법 제2조 제7항)

■ ‘**데이터 기여 보상제**’ 논의

-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네이버와 같은 서비스에 제공하고 기여한 만큼 경제적 보상으로 돌려받는 제도

6. 데이터거래 형태와 IP이슈

AI 기술 개발 계약에 있어서 IP 이슈



- 사용자 : 데이터 제공 등을 통한 가치 하락 및 정보유출 우려
- 공급자 : 지식 재산이 사용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사업의 자유도 및 노하우 유출 우려

AI 계약상 주요 검토사항

- ① 원시데이터 특유의 문제(데이터 유무, 제공 여부, 품질, 충분성)
- ② AI기술을 이용한 SW 문제(완성여부, 지연사항, SW의 품질)
- ③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이용 조건 문제 (성과 및 개발 도중 발생한 재산권, AI생성물 등)
- ④ 책임 문제
- ⑤ 기타 사용자 측의 개발 이용 목적 및 공급업체의 기술적 인식 불일치

지식재산권 관련 검토사항

- 데이터는 무체물로서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각 저작물 및 영업 비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음
→ 단, 학습된 매개변수는 대량의 수치 데이터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고, 노하우 정보 또한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지만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별도의 이용약관 등에 당사자 합의 필요)
- 프로그램 소스코드 부분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
→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공급업체에 귀속하거나 양도에 관한 사항 등을 당사자간 합의(이용 약관) 필요
- 노하우는 일부 영업비밀로서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특허법상 발명해 해당될 수 있음

6. 데이터거래 형태와 IP이슈

- **데이터 시장질서에 확립을 통한 건전한 데이터 거래생태계를 구축 필요**
 - 최근 AI 개발계약에 있어서 AI가 생성된 데이터 및 알고리즘에 대한 IP권을 일방 당사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귀속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데이터 거래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이용 조건(성과 및 개발 도중 발생한 재산권, AI생성물 등)에 있어서 불공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음
 - (사례) 금융데이터 개발사인 K사는 얼마 전 금융기관A의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업무를 수주하고 해당 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납품하였음. 그런데 금융기관A는 프로젝트 종료 후 K사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자신의 명의로 특허로 출원하고 홍보함

6. 데이터거래 형태와 IP이슈

- '20.8 과기부 데이터거래표준계약서 발표

- 제공형, 창출형, 오픈마켓형 3가지 유형

- 데이터 제공형 계약

- 일반 당사자(데이터 제공자)만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상대방에게 제공할 때 해당 데이터에 대한 이용권한, 기타 제공 조건 등을 결정하는 계약 유형

▲ (적용 사례) 제조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요구받은 치수의 정밀도나 강도를 만족하는 제품을 개발하면서 스스로 다양한 시험을 하여 데이터를 획득함. 이 데이터를 이용하면 제품 개발의 공수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해당 데이터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이용 허락할 수 있음

데이터 제공형 계약의 유형 분류		
데이터의 양도	데이터의 라이선스(이용허락)	데이터의 상호이용허락 (Cross-license)

6. 데이터거래 형태와 IP이슈

■ 데이터 창출형 계약

- 제공형과 달리 복수 당사자가 관여하여 데이터를 창출하며, 새롭게 창출한 데이터를 상대방에게 판매 시, 창출에 관여한 당사자 간의 데이터 이용권한, 이익 분배 등을 결정하는 계약 유형

▲ (적용 사례) 공작기계 제조업체 A사는 고객들의 공장에 납품한 공작기계에 센서를 설치하고 그 센서로부터 획득한 공작기계의 운영데이터를 분석함. 운영데이터는 공작기계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공작기계의 이용에 관한 조언과 유지보수 등 서비스를 할 때 활용함. 또한 A사는 고객의 각 공장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용 방법을 최적으로 예견하여 고객에게 제공. 나아가 그러한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자사의 공작기계 제품 개선에도 활용하고, 향후 가동 데이터를 통계화하여 제3자에게 판매함

- 대상데이터와 파생데이터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는 저작권, 특허, 영업비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의 요건을 만족해야 함

6. 데이터거래 형태와 IP이슈

■ 데이터 오픈마켓형(Marketplace)

- 오픈마켓을 통한 데이터 거래 시, ①오픈마켓 운영자와 데이터 제공자간, ②데이터 제공자와 이용하는 소비자간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 등을 정하는 계약 유형 (2가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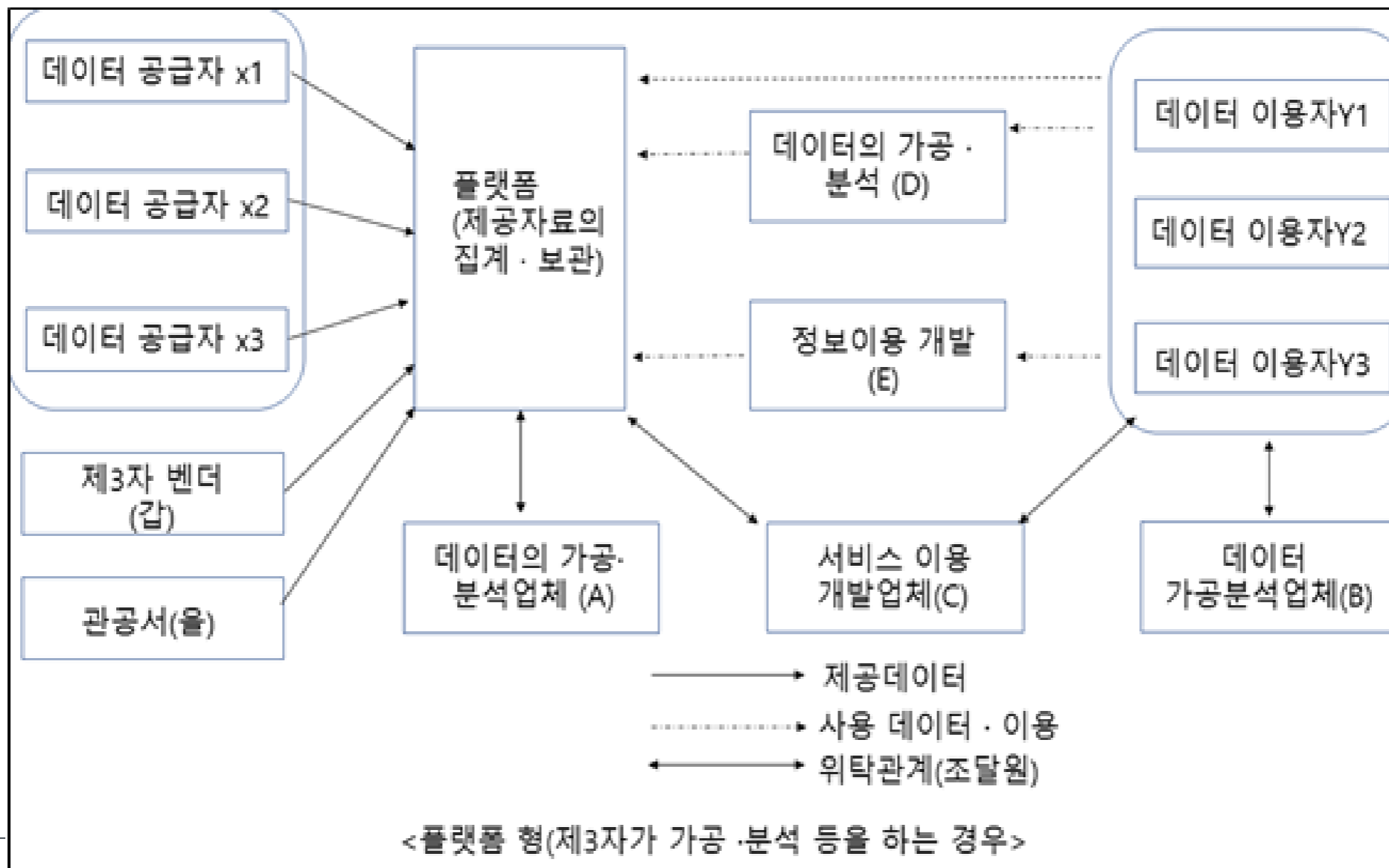
▲ (적용 사례) 국내에서 운영하는 주요 거래·과금 플랫폼들에 적용 가능. 이를 테면, 데이터스토어(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N클라우드플랫폼(네이버), OPEN API포털/빅데이터허브(SK텔레콤), 오디오피아(LGCNS), API스토어(KTH), BIGSIGHT(KT) 등이 있음

- 오픈마켓운영자는 데이터 중개 플랫폼인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사이버몰에 데이터 판매회원으로 가입한 데이터 제공자와 데이터 구매회원으로 가입한 데이터 이용자 간의 데이터 상품 거래를 중개 역할

6. 데이터거래 형태와 IP이슈

(추가 유형) 데이터 공유형(플랫폼형)

· 복수의 사업자가 데이터를 플랫폼에 제공하고, 플랫폼이 해당 데이터를 집약·보관, 가공 또는 분석하여 복수의 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서 해당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계약으로서 산업계에서 플랫폼을 이용한 데이터 공유·활용하는 사례 증가



6. 데이터거래 형태와 IP이슈

■ 권리 귀속

- “을이 제공데이터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발명, 고안, 창작 및 영업비밀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을에게 귀속한다. 단, 을은 갑에 대하여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무상[유상]의 실시 허락을 한다.”(제공형)

■ 계약에 의한 보호

- 제공 데이터에 포함된 영업비밀, 노하우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수신자에 대해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중요함

■ 오용 등을 방지하는 기술

- 제공 데이터의 부정이용 및 무단 유출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제공 데이터의 암호화, 접근 제한, 워터 마크 기술을 이용한 데이터 출처 등을 명시하는 방법 등이 있음

6. 데이터거래 형태와 IP이슈

■ 대상데이터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창출형)

- ① 대상데이터에 관한 저작권(편집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지만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하 같다)은 갑 및 을이 종전부터 가지는 것 및 본 계약의 범위 밖에서 창출, 취득 또는 수집한 것을 제외하고, 갑 및 을의 공유로 한다.
- ② 파생데이터에 관한 저작권의 귀속은 파생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별지2에서 정한 대로 한다. 다만 파생데이터 중 별지2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것에 관해서는 갑 및 을이 별도 합의한 뒤 파생데이터에 관한 저작권의 귀속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 ③ 갑 및 을은 대상데이터 등의 이용에 관해서, 상대방 당사자 및 정당하게 권리를 취득하거나 승계한 제3자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④ 대상데이터 등에 기하여 새롭게 창출한 특허권 기타 지식재산권(다만, 저작권은 제외한다. 이하 “특허권 등”이라 함)은 해당 특허권 등을 창출한 자가 속하는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 ⑤ 갑 및 을이 대상데이터 등에 기하여 공동으로 새롭게 창출한 특허권 등에 관해서는 갑 및 을의 공유(그 지분은 기여도에 따라서 정한다)로 한다. 이 경우, 갑과 을은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대가지급의무를 지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공유 특허권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직무발명의 취득절차(‘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규정의 정비 등 직무발명제도의 적절한 운용, 양도절차 등)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공유 특허권 등의 지분에 따라 부담한다.
- ⑦ 갑 및 을은 대상데이터 등과 관련하여 각각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본 계약의 정함에 따라서 상호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갑 및 을은 본 계약에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대상데이터 등에 관한 어떤 권리도 양도, 이전, 이용허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호 확인한다.

6. 데이터거래 형태와 IP이슈

■ 제공데이터 등에 대한 보증 (제공형)

- ① 갑은 제공데이터가 적법하고 적절한 방법에 의해 취득되었음을 표명하고 보증한다.
- ② 갑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을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의 생성, 수집, 제공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보증한다.
- ③ 갑은 제공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데이터에 하자 내지 결함이 없음), 안전성(데이터에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가 없음), 유효성(본 계약 목적에의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 ④ 갑은 제공데이터가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 ⑤ 갑은 제공데이터에 제3자의 지식재산권의 대상으로 되는 데이터가 포함되었거나 기타 상대방의 이용에 관하여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신속히 상대방 당사자와 협의하여 해당 제3자로부터의 이용 허락의 취득 또는 해당 데이터를 제거하는 조치 기타 상대방 당사자가 이용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⑥ 갑은 제공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안전성, 유효성의 어느 하나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제공데이터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알리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용 등 하게 하는 경우, 을에게 관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하 생략]

6. 데이터거래 형태와 IP이슈

- **대상데이터의 이용권한**

- 대상데이터별 이용권한(이용목적, 가공 등의 가부,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가부) 배분, 액세스 방법 등, 대상데이터의 지식재산권 귀속

- **파생데이터의 이용권한**

- 파생데이터의 이용권한의 배분, 파생데이터의 지식재산권의 귀속

- **로열티 지급**

-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스 계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 계약 체결 시에 이니셜 로열티를 지급하고 그 데이터 이용에 따라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의 일정비율을 러닝 로열티로 지급하는 방법. 이 방법도 위험 및 효과를 적절하게 분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어떤 데이터는 매일 발생하며 매일 업데이트 해 나가야만 데이터 가치를 가질 수 있음. 이러한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의 지속적인 제공을 조건으로 러닝 로열티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음

7. 데이터 마이닝 면책 범위

▣ 개요와 쟁점

■ 개요

- AI 산업발전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빅데이터 활용·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타인의 데이터(저작물) 활용은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
-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여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AI 산업 활성화 도모
- 현재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에서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규정 신설
- 컴퓨터로 저작물 등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제작 등의 행위를 면책

■ 쟁점

- TDM 면책의 범위
- 제한되는 저작재산권을 복제에 한정할 것인가?
- 비학술적 연구, 저작물에 데이터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한을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7. 데이터 마이닝 면책 범위

■ 검토

- 현재 개정안은 영국과 독일 저작권법과 유사한 접근
 - * 영국, 비영리적 연구로 한정 (불확정 의미라는 비판)
 - *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동의 없이 처리 가능 (산업적 이용 허용)
- 일본 저작권법과 같이 **영리적 목적**의 TDM 허용
 - * '19년 제30조의4(저작물의 표현을 향수하지 않는 이용) 조항 신설
- **'복제'**에 한정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전송'** 및 **'제작'** 허용 여부



동덕여자대학교 웹사이트 <https://bigdata.dongduk.ac.kr/page/page20>

감사합니다

손승우
legalssw@gmail.com